



제 420 회 국 회 (임 시 회)
제 2 차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한체육회 등의 보조금·기부금품 정보 공개 >

■ 정연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91호)

2025. 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전 완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대한체육회 등의 보조금·기부금품 정보 공개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정연욱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4. 11. 19.
3. 회 부 일: 2024.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의 재정 상황과 자금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과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8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한체육회 등의 보조금·기부금품 정보 공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8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대한체육회) ① ~ ⑦ (생략) <u><신설></u>	제33조(대한체육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단체 중 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및 기부금품에 관한 해당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u>

⑧ (생략)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본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	-----------------------------------

다.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등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경비·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음¹⁾.
 - 그러나 최근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보조금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과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및 83개 회원종목단체²⁾의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집행상 투명성이 제고될 여지가 있는바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이나, 아래와 같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2) 2025. 1. 6. 기준

- 현재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는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³⁾, 「법인세법」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⁵⁾ 등에 근거하여 보조금 및 기부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안 제33조제8항 후단에 따르면, 유관 법률에 따라 이미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경우 별도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바,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 각 단체별 세부 정보를 통합하여 일괄 공개하지 않는 한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음.
- ① 대한체육회와 동일하게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한장애인 체육회 제외, ② 회원종목단체와 동일하게 대한체육회의 회원 단체인 지방체육회 제외, ③ 현행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에 해당하는 프로스포츠단체 제외 등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에게만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관·단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문체부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체육단체의 자금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 단체 홈페이지에 보조금 및

3) 1,000만원 이상의 보조·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입·지출내역 및 정산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조금통합포털)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4)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는 법규정상 명시적인 공개 대상은 아니나, 모두 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하고 있음(문체부)

(참고 3. 「법인세법」 관련 규정)

5) 등록청 또는 모집자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 또는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 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기부금 현황 및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현행법 제2조제11호의 표현에 따라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로 수정하여 경기단체 전체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 1]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보조금·기부금 현황

○ 대한체육회 보조금·기부금 현황

연도	보조금 (단위 : 백만원)	기부금 (단위 : 천원)
2020년	317,101	179,118
2021년	352,875	2,077,156
2022년	374,642	48,865
2023년	412,976	4,842,102
2024년	408,766	1,142,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보조금·기부금 현황 (2023년 결산 기준)

(단위 : 원)

연번	단체명	보조금	기부금
1	대한가라테연맹	525,853,537	58,505,000
2	대한검도회	810,786,210	45,000,000
3	대한게이트볼협회	359,560,941	15,000,000
4	대한골프협회	979,667,540	1,601,770,742
5	대한국학기공협회	551,730,564	38,950,000
6	대한궁도협회	524,353,805	116,000,000
7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305,398,319	12,700,000
8	대한근대5종연맹	2,575,118,818	1,861,474,400
9	대한민국농구협회	5,929,294,305	600,000,000
10	대한당구연맹	4,112,568,667	7,000,000
11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1,250,821,184	60,000,000
12	대한력비협회	1,517,574,579	878,390,640
13	대한레슬링협회	4,938,138,164	387,001,027
14	대한롤러스포츠연맹	1,072,679,423	25,329,000
15	대한루지경기연맹	1,595,977,086	270,000,000
16	대한바둑협회	3,137,199,364	40,024,733
17	대한바이애슬론연맹	2,330,477,701	224,234,000
18	대한민국배구협회	5,026,682,983	315,200,000
19	대한배드민턴협회	10,946,651,344	-
20	대한보디빌딩협회	833,250,112	149,416,838
21	대한복싱협회	2,110,909,262	10,000,000
22	대한볼링협회	723,719,511	126,400,000
23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3,267,765,194	96,139,525
24	대한빙상경기연맹	3,968,358,127	2,028,426,085
25	대한사격연맹	3,432,971,811	900,000,000

연번	단체명	보조금	기부금
26	대한산악연맹	1,406,221,970	391,313,458
27	대한세팍타크로협회	1,539,292,833	133,893,660
28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1,973,511,902	141,900,000
29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538,309,069	131,246,000
30	대한수영연맹	5,001,467,171	557,460,450
31	대한수중핀수영협회	662,752,644	53,597,000
32	대한스쿼시연맹	1,540,259,856	98,000,000
33	대한스키협회	7,203,214,117	2,828,870,160
34	대한승마협회	1,339,089,030	342,226,216
35	대한씨름협회	10,834,809,594	417,000,000
36	대한아이스하키협회	3,535,149,110	142,640,000
37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11,811,173,714	460,000,000
38	대한양궁협회	2,608,992,881	7,384,461,500
39	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	1,616,958,840	56,450,000
40	대한역도연맹	1,624,238,876	295,000,000
41	대한요트협회	2,181,616,362	169,521,584
42	대한우슈협회	1,476,032,603	56,258,720
43	대한유도회	3,280,172,236	226,000,000
44	대한육상연맹	5,091,433,545	1,813,030,000
45	대한자전거연맹	4,673,356,554	412,250,000
46	대한조정협회	1,619,240,517	560,219,865
47	대한민국족구협회	2,504,428,760	70,000,000
48	대한주짓수회	288,315,692	26,000,000
49	대한민국줄넘기협회	323,855,120	10,000,000
50	대한철인3종협회	3,011,025,916	398,626,000
51	대한체조협회	7,145,094,961	1,042,500,000
52	대한축구협회	34,366,141,335	3,478,546,242
53	대한카누연맹	2,231,872,678	171,123,456
54	대한컬링연맹	1,980,353,967	826,114,000
55	대한탁구협회	6,179,023,423	1,786,990,250
56	대한태권도협회	5,368,919,080	-
57	대한택견회	759,480,430	18,450,000
58	대한테니스협회	7,229,196,613	760,943,400
59	대한파크골프협회	472,427,320	37,000,000
60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952,714,645	52,072,400
61	대한펜싱협회	3,994,879,995	2,838,500,000
62	대한하키협회	4,732,792,890	354,500,000
63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378,552,140	15,500,000
64	대한핸드볼협회	3,119,024,000	7,000,000,000
65	대한요가회	66,600,000	47,500,000
66	대한킥복싱협회	-	-
67	한국e스포츠협회	4,343,806,000	70,000,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참고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5. 8.>

1.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4조(정보공시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정보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제3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참고 3] 「법인세법」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호 바목의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 2. (생략)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공개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나.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4. ~ 8.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 별로 한다.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호 바목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별지 제63호의3 서식]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②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지 점 명*)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등)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근거법령			
(지점 소재지)						
* 기부금 단체의 지점(분사무소)이 기부받은 경우, 지점명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④ 기부내용						
코 드	구 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기재부 고시(제2024-22호)」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번호	기부금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u>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u> 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거나 <u>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u>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익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1호바목)」

번호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관할지방청)	지정일	지정기간
5658	<u>대한장애인체육회</u>	서울지방국세청	2023-03-31	2023-01-01~2028-12-31

[참고 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자가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공개 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③ 모집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기부금품의 사용명세